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8. 7. 4.

제 출 자 : 평창군수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평창군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함

주요골자

가.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안제2조)

나.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안제3조)

다. 영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은 다음과 같다.(안제5조)

1. 재난발생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군수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일부를 용자지원할 수 있으며,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안제6조)

1.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하되,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2. 이율
 - 민간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8%(연체이자율:연10%)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연 5%(연체이자율:연8%)
3.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안제8조)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안제10조)

사.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안제11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확보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 재관14001-199('98.5.26)호 - 별첨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바. 기타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 - 별첨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자) ①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용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연리 5%

④연체이자율은 제3항제1호는 연10%로, 제3항제2호는 연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용자금의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장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용자업무 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회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②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재해 없는 강원건설”



강원도
KANGWON PROVINCE

강원도	법제심사필
	98년 5월 26일 제 4회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61)54-2975 / 전송 419 담당 엄명삼

문서번호 재판 14001- 199

시행일자 1998. 5. 26.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부수	76222	지시	
접수	일자		결재	과장
	시간			부서장
	번호	6622	공람	
처리과	인재과			
담당자	손영미			

제 목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1. 재판14001-75('97.9.27)호 및 재판14001-75('98.3.3)호의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시·군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부 끝.

원본과 상위없음
1998. 6. 29
직: 지방자치행정: 손영미

강원도지



수신처 : 401 - 18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결

○○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시(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군수)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시장(군수)은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시장(군수)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용자) ①시장(군수)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 이하로 하되,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

제7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시·군실정에 맞게 조정)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연리 5%

②용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8조(용자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 확보 및 안정성유지를 위하여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용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군수)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국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조성의 목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함.

□ 기금의 조성방법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

⇒ 조성액 : 15,200천원

□ 기금의 용도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군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에서 요하는 사항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
- 적립기금액은 사업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 기금의 증식(예탁)방법

- 가입시 군금고의 이자수익률이 최고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 '98. 6. 3일 기준금리

금융기관	예금종류	예치기간	이자율	비 고
농협군지부	C D 환매채	30~ 59	14.55	
		60~ 90	14.85	
		91~119	15.00	
		120~180	14.25	
		181~270	13.95	
	정기예금	1개월이상	9.00	
		3개월이상	11.00	
		6개월이상	12.50	
		12개월	12.00	
		12개월초과	11.50	
		24개월이상	11.50	
		36개월	11.50	

□ 기금의 용자

- 재난관리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지원
-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하되,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
- 용자금의 이율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5%
- 연체이자율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연10%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연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 용자금의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장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금융기관이 대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1.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 회수시 납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 기금의 회계관리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로 처리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회계공무원 지정
 1.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 기금의 출납
기금관리에 필요한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
- 계획 및 결산보고
 1.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2.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